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20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서지영·박수민·김대식

박충권 • 이인선 • 김성원

이헌승 • 곽규택 • 김희정

서천호 · 정성국 · 윤영석

김용태 의원(13인)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사교육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교육비 지출은 27조원을 넘어섬. 이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공교육 혁신을 추진함.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자기주도형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 나. 디지털기반교육은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추진되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등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하고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 교육 등을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원을 교

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1조).

- 마.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추진과 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 및 취소와 디지털교과서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음(안 제16조).
- 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 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
- 아. 교육부장관은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 도록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교 과서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21조).
- 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학습데이터 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6조).

- 차.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 대하여 각각의 주체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학생의 학습데 이터를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학습테이터를 전송받은 자(본인은 제외)는 전송받은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8조).
- 카. 학습데이터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 3. "디지털교과서"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 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능정보기술 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4. "디지털기반교육"이란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수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 5. "학습데이터"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의 학습 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학생의 소속·학년·반 등의 학적정보 및 이름 등의 인적정보 나. 학생의 학습교과·학습량·학습시간·학습진도 등 학습과정
 - 다. 학생이 수행한 과제·과제수행 내역·과제 평가결과 등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

및 이수상황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 6.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란 디지털교과서를 개발·구축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1 항에 따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 제3조(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 ① 디지털기반교육은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설계·추진되어야 한다.
 - ② 디지털기반교육은 지능정보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추진되어야 한다.
 - ③ 디지털기반교육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추진되어야 한다.

- ④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교수자로서의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디지털기반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기반교육의 조성 및 확산

- 제5조(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시스 템의 구축·운영
 - 2.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디지털 기반 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의 확보·유지관리

- 4. 그 밖에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연구·분석)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 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을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 또는 위탁 전문기관·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 또는 위탁 전문기관·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디지털 역량 교육)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역량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확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기반의 수업 설계 역량 등 교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 디지털기반교육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교원의 역량 개발

- 제9조(교원 연수)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역량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평등하게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원 연수 여건 격차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연수를 위한 협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원 연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국내외의 교육 •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파견근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 및 교수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을 교육행정기 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

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교수학 습 활동 성과가 뛰어난 교원 및 학교에 대하여 포상 등 지원을 할수 있다.

제4장 디지털교과서의 운영체계

- 제13조(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준수하여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 제14조(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 합격 및 취소) ① 디지털교과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또는 디지털교과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인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 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교과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

였을 때

- 2. 디지털교과서의 내용, 체제,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 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3. 그 밖에 디지털교과서를 존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인정 합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사용자 지원 및 대응 관리 체계
 - 2. 장애관리 체계
 - 3.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등 변경 관리
 - 4. 그 밖에 디지털교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품질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디지털교과서 등의 저작권) 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

다.

-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지적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실제학생이 사용한 저작물에 한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다.
- 제17조(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지원)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교과 서 발행사 등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기관 또 는 단체의 공교육 활성화 기여 수준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의무) 제14조에 따라 검·인정에 합격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민법」 상 해산, 파산, 청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중 또는 학년 중에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도・감독 및 조치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실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또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하거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실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또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장, 사무실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려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또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사항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인정 합격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류 제출 명령·지도·감독,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3항에 따른 증표 제시,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학습데이터의 처리

- 제20조(학습데이터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 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학습데이터 처리 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교육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학습데이터 통합 정보시스템 (이하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운영·관리 정보시스템(이하 "디지털 교과서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개발·운영할 때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안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및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디지털교과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 · 운영
 - 2. 개별 디지털교과서 학습상황 등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 3. 디지털교과서 변경 등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이력정보 연계 지원
 - 4.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 ③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23조(국가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 등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데이터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되, 가명처리는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 1.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연구·분석
 - 2.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맞춤형 학습 지원정책 마련
 - 3.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정 책 마련
 - 4.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수행
 - 5.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기반교 육 정책의 기획·집행 및 평가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학습데이터는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되어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균등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익명·가명처리 등 비식별 처리 등 가공하여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학습데이터 처리) 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제23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범위·방식으로만수집·분석·활용 등 처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과 무관한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제1항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관리·운영지침의 수립 및 준수)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통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의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경우 네트워크의 분리, 보안인증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등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는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6조(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학습데이터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국가통합 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에 보관된 학습데이터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 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 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27조(위임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데이 터의 수집·이용·처리·보유 범위·보유 또는 파기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송요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 대하여 각각의 주체가 관리하 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해당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본인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데이터를 전송받은 자(본인은 제외한다)는 전송받은 학습데이터 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전송 대상 학습데이터의 범위, 요구·전송의 방식과 절차 및 제3자 제공 금지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6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 근 권한을 넘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 에 보관된 학습데이터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 색・복제한 자
 - 2. 제2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 3. 제26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에 따른 조치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마련하지 않거나 조 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또는 거짓으로 진술

한 자

- 5.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